#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65 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상훈·신성범

최수진 · 서천호 · 임이자

김장겸 • 김 건 • 박성훈

조지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2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364호) 및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 호 제93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제1항 전단 중 "개선"을 "개선, 「행정절차법」 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개선"을 "개선, 인공지능의 도입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 ①	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 ①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	
무원의 적극행정(공무원이 불	
합리한 규제의 <u>개선</u> 등 공공의	<u>개선, 「행정절차법」</u>
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	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
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	도입
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장려하	
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계획을 수립・시행할 수	
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	,
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	
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	
한다.	<b>.</b>
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	2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	
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	
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. 다	
만,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	
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(시	
•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	
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	
한다)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	
능을 대신할 수 있다.	

- 1. (생략)
- 2.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- 3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2
개선, 인공지능의 도입
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